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주요 변경내용

〈2023. 05. 25. 업데이트〉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변경내용(2023. 5. 25. 업데이트)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2. 운영체계			
현장평가 - 현장평가 주간 통보	29	<p>〈변경〉</p> <p>3) 현장평가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u>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u> ●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신설〉</p>	<p>3) 현장평가 가. 현장평가 일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u>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단, 평가운영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u> ●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일을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3년 6월 현장평가어린이집부터 적용)
	30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평가 주간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주간 확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평가 일정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일정 확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주간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 현장평가일 확인시기 :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현장평가 - 현장평가 실시	33	<p><변경> 3) 현장평가 나.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중 략) -----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 /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p>	<p>3) 현장평가 나.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중 략) -----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 /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u>보육교사 상호작용</u> 등 평가지표 확인 내용</p>
종합평가 - 평가 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38	<p><변경> 4) 종합평가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 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 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 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u>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 정</u> -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 -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 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 이 진행 <신설> -----중 략 ----- <신설></p>	<p>4) 종합평가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 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 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 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u>과정중단 및 인가변동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 행</u> -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 -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 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 이 진행 - 휴지로 과정중단된 어린이집은 <u>운영재개 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u> -----중 략 ----- ※ <u>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 보 진행</u></p>
결과발표 - 평가결과 최종통보	43	<p>5) 결과발표 다. 평가결과 최종통보 -----중 략 ----- ● 평가결과 최종통보서 확인 ●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은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음 <신설></p>	<p>5) 결과발표 다. 평가결과 최종통보 -----중 략 ----- ● 평가결과 최종통보서 확인 ●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은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음 ※ <u>평가주기는 평가결과 최종통보일자부터 시작</u></p>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평가 후 관리 - 사후방문 지원	45	<p>6) 평가 후 관리 나. 사후방문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의무 참여 <p>※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p> <p><신설></p>	<p>6) 평가 후 관리 나. 사후방문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의무 참여 <p>※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p> <p>※ 평가결과 재차 하위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으로 연계, 지표 중심 컨설팅 진행(다만, 연속 D등급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p>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46	<p><변경></p> <p>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중 략 -----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중 략 ----- </div> <p><신설></p>	<p>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점검 직전 월에 사전 고지 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다. <p>※ 단,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전 고지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중 략 -----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 D)을 받은 어린이집 <p>※ 다만, 연속 D등급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p> </div>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47	<p><변경></p> <p>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1개 영역 이상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함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p>-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p>	<p>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함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p><삭제></p>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47	<p><변경> 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u>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함 • <u>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인 경우</u> 최종 확인점검 결과로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함 ※ <u>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u> 	<p>6)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u>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함 <p><삭제></p>
평가 후 관리 - 평가주기 조정관리	50	<p>6) 평가 후 관리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u>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u>사유발생일(변경인사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u> 선정통보를 진행한다.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월은 조정될 수 있음 • <u>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u> ※ 단,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u>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u> 선정통보를 진행한다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로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u>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u> • <u>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u> ● <u>이외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u>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p>6) 평가 후 관리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u>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p>●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p> <p>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 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p> <p>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p> <p>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를 진행함</p> <table border="1" data-bbox="382 697 797 930"> <thead> <tr> <th>업무주체</th> <th>주요업무</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집</td> <td>-</td> <td>·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td> </tr> <tr> <td>시·도 및 시·군·구</td> <td>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계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td> </tr> <tr> <td>한국보육진흥원</td> <td>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td> </tr> </tbody> </table> <p>※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그림 6]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p>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계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 -----</p> <p>〈삭제〉</p> <p>〈삭제〉</p>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계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평가지표 주요 변경내용(2023. 3. 10. 업데이트)

구분	쪽	현행	개선사항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41	<변경> 2-3-1-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2-3-1-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중 략) -----</p> <p>※ 단, 정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중 략) -----</p> <p>※ 단,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함.</p> </div>																									
영역 3. 건강·안전	203	<변경>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변경>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영유아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50%;">내용</th> <th style="width: 50%;">실시주기</th> </tr> </thead> <tbody> <tr> <td>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td> <td>6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td> <td>3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td> <td>3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재난대비 안전교육</td> <td>6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교통안전교육</td> <td>2개월에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div>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영유아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50%;">내용</th> <th style="width: 50%;">실시주기</th> </tr> </thead> <tbody> <tr> <td>성폭력 예방교육</td> <td>6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아동학대 예방교육</td> <td>6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td> <td>3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td> <td>3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재난대비 안전교육</td> <td>6개월에 1회 이상</td> </tr> <tr> <td>교통안전교육</td> <td>2개월에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div>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